



화학제품안전법 제도이행 담당기관

| 담당업무 | 관할기관 (전화번호) |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Tel : 1800-0490) |
| 시험·검사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Tel : 02-2102-268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Tel : 031-428-3820) 한국의류시험연구원 (Tel : 031-596-5639)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Tel : 02-2164-1412) FITI시험연구원 (Tel : 043-711-8863) KOTIT시험연구원 (Tel : 02-3451-7197) |
| 기존살생물질 신고 살생물질 승인 살생물제품 승인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위해성평가연구과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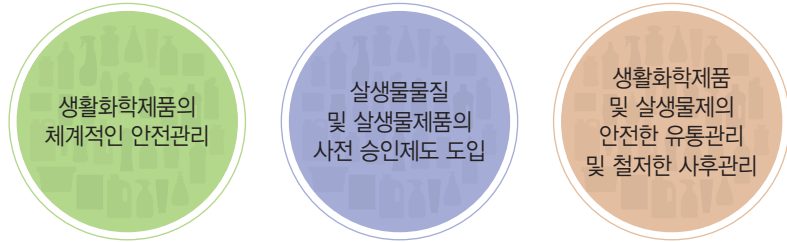
안내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요

제정 이유

- 가슴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
- 이에 따라 생활화학제품의 체계적 관리 등 사전 예방 관리 체계 구축

법률 주요 내용



주요 기업 이행사항

- I. 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품 관리¹⁾**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이행
- II. 살생물제 관리²⁾**
 -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 살생물물질 승인
 - 살생물제품 승인
 - 살생물처리제품 안전·표시기준 이행
- III. 유통 및 사후관리³⁾**
 - 표시·광고 제한
 - 과징금·벌칙 부과

¹⁾ 안내서 4 페이지 참조

²⁾ 안내서 19 페이지 참조

³⁾ 안내서 41 페이지 참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내서



I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

- 01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5
- 02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9
- 0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 · 표시기준 1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위해우려제품 품목 및 관리조항이 일괄 이관되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됨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품목에 따라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구분됨

| 분류 | 품목 | 비고 |
|--------------|--|---------|
| 세정제품 | 세정제 제거제 | 확인 및 신고 |
| 세탁제품 |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 확인 및 신고 |
| 코팅제품 | 광택 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다림질보조제 | 확인 및 신고 |
| 접착·접합제품 | 접착제 접합제 | 확인 및 신고 |
| 방향·탈취제품 | 방향제 탈취제 | 확인 및 신고 |
| 염색·도색제품 |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 확인 및 신고 |
| 자동차 전용 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 확인 및 신고 |
|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인쇄용 잉크·토너 | 확인 및 신고 |
| 미용제품 | 미용 접착제 문신용 염료 | 확인 및 신고 |
| 살균제품 | 살균제 살조제 | 확인 및 신고 |
| |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 승인 |
| | 기피제 | 확인 및 신고 |
| 구제제품 |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 승인 |
|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 |
| 보존·보존처리제품 |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확인 및 신고 |
| 기타 | 초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 확인 및 신고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제품)

01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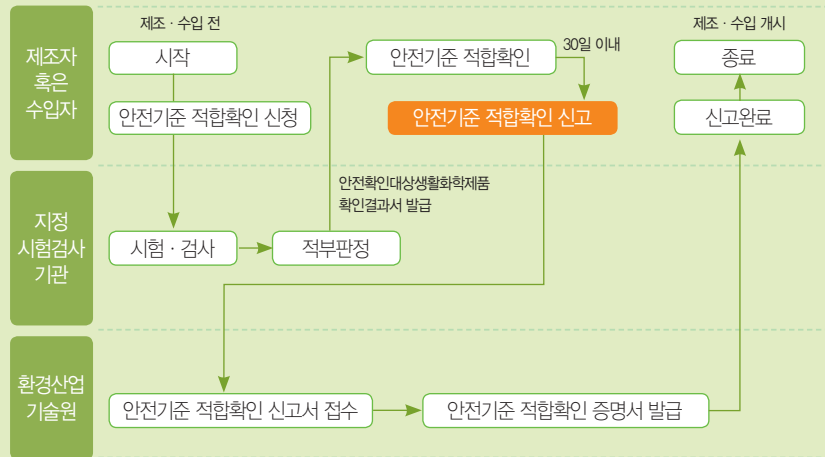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및 신고 개요 (법 제10조)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품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함

- 누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 무엇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단,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 어떻게** •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
• 성분 등 제품 정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절차



안전기준 적합확인 방법(시험·검사)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위한 시험·검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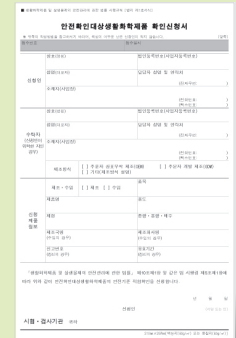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Tel : 02-2102-2682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Tel : 031-428-3820
- 한국리류시험연구원 Tel : 031-596-5639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Tel : 02-2164-1412
- FITI시험연구원 Tel : 043-711-8863
- KOTIT시험연구원 Tel : 02-3451-7197

안전기준 적합확인 제출서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갱신 시)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 확인을 받은날로부터 3년
- 유효기간 경과 전 재확인(필요시)



벌칙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개요 (법 제1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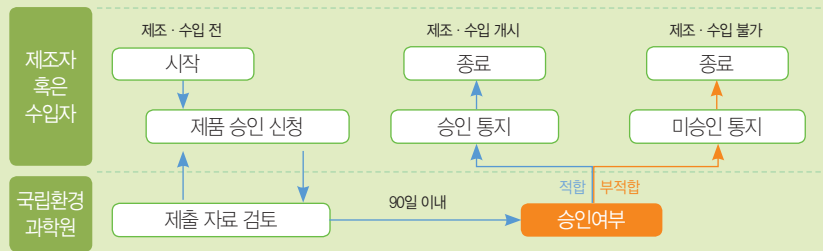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식약처에서 관리 주체가 환경부로 이관된 제품군

- 누가**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 무엇을** • 살균제품: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 구제제품: 보건용 구제·방자·유인살충제 / 보건용 기피제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 어떻게**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승인

승인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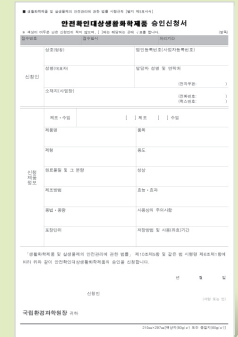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신청 방법

승인가관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chemp.me.go.kr>으로 승인 신청)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신청인 일반정보
 - 신청제품정보(제품명, 품목, 제형 등)
- 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 화학물질의 용도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 화학물질의 유해성
 - 화학물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자료
 - 효과·효능
 - 해당 제품의 유해성
 - 해당 제품의 성분 분석에 관한 시험·검사의 기준 및 방법
 - 안전한 사용에 관한 자료(해당 제품의 안전성, 폭발·화재·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및 보호구 등)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완료 발급서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특이사항

- 식약처에서 이관되는 제품은 살생물제품의 승인 유효기간 동안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며, 살생물제품의 승인 유효기간 종료일 후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될 예정임
- 따라서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 이행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규정된 기간 내 살생물제 규제 준수가 병행되어야 함
- 살생물제 규제준수
 -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 살생물물질 승인
 - 살생물제품 승인
 - 살생물제품 표시기준

벌칙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 금지
 -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거짓으로 받은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03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법 제9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품목별 안전기준 고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공통)

※ 개별 품목 안전기준은 고시 참조

-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5종(PHMG, PGH, PHMB, MIT, CMIT)

| 물질명 | 적용 제형 ¹⁾ |
|--------------------------------|---------------------|
|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 분사형 |
|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 분사형 |
|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 분사형 |
|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 분사형 |
|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 분사형 |

¹⁾ 방향제는 모든 제형에 적용함

- 품목별 함량제한물질 및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지정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 용기 및 포장

– 겉모양

- 외관은 깨끗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부위 등 위험부위가 없어야 함
- 구조는 변형·파손 등이 없어야 하고, 내용물이 새지 않아야 함
- 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의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분사 후 흐름 현상이 없어야 함

– 강도 및 누수

- 용기 강도 시험을 실시할 때 마개 또는 몸체 등 용기의 파손이 없어야 하며 제품의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아야 함
- 누수 시험을 실시할 때 제품의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아야 함
- 캡슐형 세탁세제의 포장으로 사용되는 수용성 포장재에 대한 누수, 강도 기준 충족되어야 함 (20 °C 의 물에서 30 초 이상 내용물이 유지되어야 함. 표준시험조건 [온도 (23 ± 2) °C, 상대습도 (50 ± 5) %] 하에서 최소한 300 N 의 기계적 압축강도를 견뎌야 함)

- 중량 또는 용량

– 제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계량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 준수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어린이보호포장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가정에서 보관·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

- 어린이보호포장 필수 품목기준

- 액체형 자동차용 워셔액
- 액체형 자동차용 부동액
- 액체형 순간접착제(순간 접착력 있는 미용 접착제 포함)
- 캡슐형 세탁세제
- pH 2.0이하 또는 pH 11.5이상의 액체형 제품. 단, 40 °C에서 동점도 20.5 mm²/s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기준

– 제품 내 함유된 물질이 어린이 보호포장 적용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제품의 제형을 고려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한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함

-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외기준

-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물질 기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되지 않음
 - 1)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여 개봉할 수 있는 용기
 - 2) 개봉이 불가능한 분사형 용기
 - 3) 개봉 후 1회에 전량이 소모되는 1회용 용기
 - 4) 개봉 후 내용물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용기
 - 5) 실제 중량 15kg 이상의 제품
 - 6) 제품의 특성상 별도의 용기나 포장이 어려운 제품

안전기준 적용 예외

『안전기준 미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 | |
|-----------------|-----------------------|
| 1)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 2)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
| 3)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 4) 보건용 구제·방자·기피·유인살충제 |
| 5) 보건용 기피제 | 6)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 7)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 |



II. 살생물제 관리

-
- 01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23
 - 02 살생물물질 승인 27
 - 03 살생물제품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 관리 33





살생물제란

살생물제: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살생물물질

-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살생물제품

-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살생물제품유형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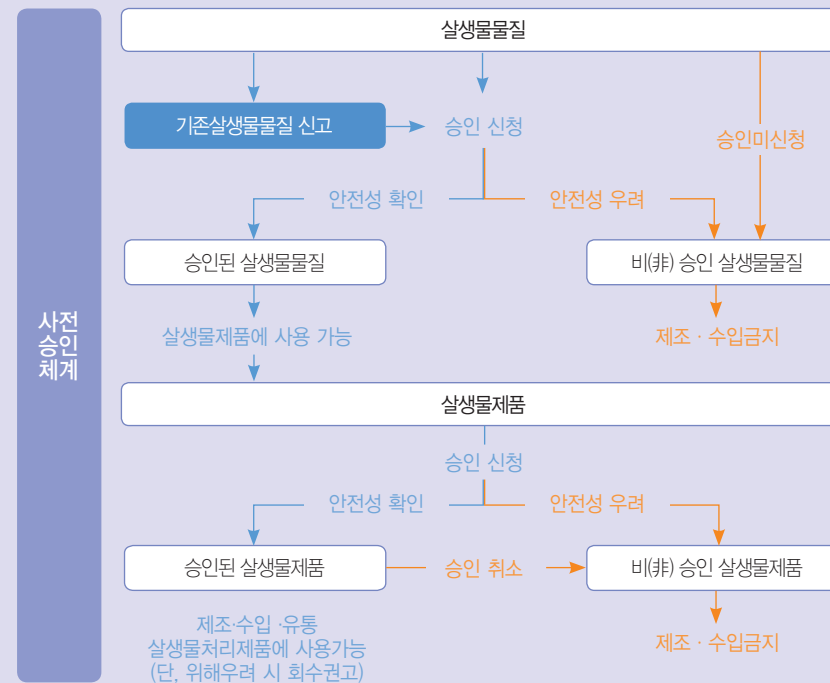
| 분류 | 살생물제품유형 | 분류 | 살생물제품유형 |
|----------------|------------------|----------------------|------------------|
| 살균제류 (소독제류) | (1) 살균제 | 보존제류 (방부제류) | (8) 제품보존용 보존제 |
| | (2) 살조제 | | (9)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
| 구제제류 | (3) 살서제 | | (10)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 | (4)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 | (11) 목재용 보존제 |
| | (5) 살충제 | | (12) 건축자재용 보존제 |
| | (6)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 | (13) 재료·장비용 보존제 |
| | (7) 기피제 | | (14) 사체·박제용 보존제 |
| | 기타 | (15)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 |

살생물처리제품

-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살생물제 사전승인체계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전승인대상
살생물물질
관리

살생물제 관리

살생물처리제품 및 살생물제
유통 및 시·후관리

화학제품관리시스템



01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법 제18조)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기간 동안 승인유예를 받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2019년 6월 30일까지 해당 살생물물질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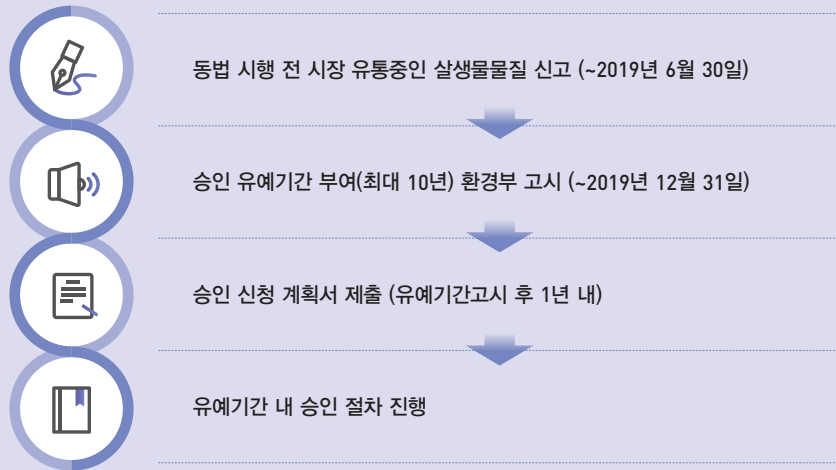
기존살생물물질이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

누가 •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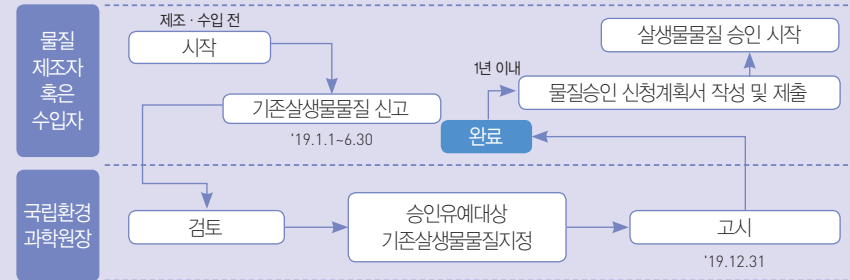
어떻게 •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기존살생물물질 규제이행 Timeline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방법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절차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제출자료

-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제조 또는 수입자의 성명, 상호, 주소, 연락처
 -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 물질의 화학적 조성
 - 제조(수입)량
 -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 기존살생물물질의 상세용도
- 기존살생물물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후 기존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해당 물질이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유형 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 기간이 부여되며, 승인유예된 물질은 유예기간 동안 승인 없이 물질 제조·수입 가능
- 기존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되지 아닐할 경우 기존살생물물질 지정·고시한 날부터 제조 및 수입 금지



살생물제제품유형별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 유예기간 고시 | 3년 승인유예 | 5년 승인유예 | 8년 승인유예 | 10년 승인유예 |
|-------------|---|--|---|--|
| '19.12.31 | '22.12.31 | '24.12.31 | '27.12.31 | '29.12.31 |
| 승인유예기간 | 3년 | 5년 | 8년 | 10년 |
| 살생물제품 유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균제 살조제(殺藻劑) 살충제 기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재용 보존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족류용 보존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방법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고시 후 1년 이내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 | |
|------|--|
| 이행주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자 |
| 이행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작성 및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 및 방법, 물질 승인의 신청 예정일 - 제출기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고시된 된 날부터 1년 이내 |
| 제출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chemp.me.go.kr으로 제출) |

02 살생물물질 승인





살생물물질 승인 (법 제12조)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누가 • 살생물제 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어떻게 • 살생물물질 승인

승인 제외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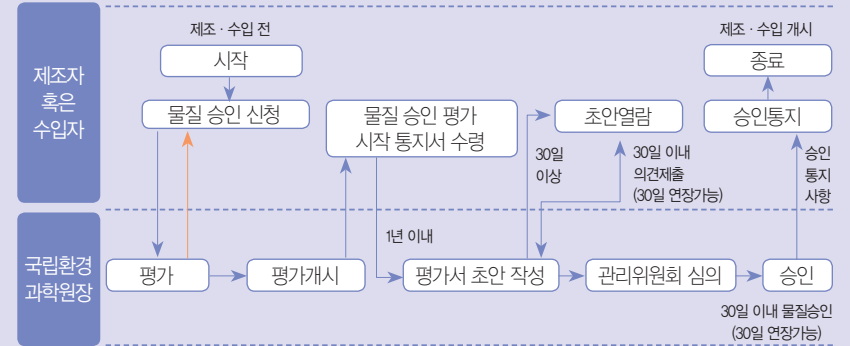
1.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
2.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용 살생물제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3.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試製品)인 살생물제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4.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살생물물질
5. **타법에서 규제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승인제외대상 타법을 및 제품군(타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의 제품)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
2.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 - 군수품
3. 「농약관리법」 -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 농약활용기자재
4. 「먹는물관리법」 - 수처리제
5. 「사료관리법」 - 단미사료, 보조사료
6. 「선박평형수관리법」 - 처리물질
7. 「식품위생법」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약사법」 - 의약품, 의약외품,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9. 「위생용품 관리법」 - 위생용품
10.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
11. 「화장품법」 - 화장품

살생물물질 승인 방법

살생물물질 승인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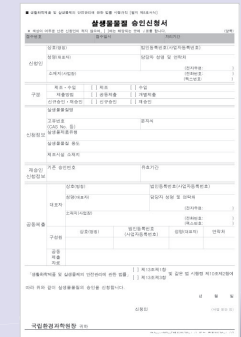


살생물물질 승인가관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chemp.me.go.kr>으로 승인 신청)

살생물물질 승인 제출서류

-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신청인 일반정보
 - 신청정보(살생물물질명, 살생물제제품유형 등)
-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등 식별정보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
- 살생물물질에 관한 자료
 -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
 - 효과·효능
 - 분류 및 표시
 -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 살생물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위해성 평가 포함)





살생물물질 승인 유효기간

| 구분 | 기준 |
|----------|---|
| 유효기간 10년 | • 일반적인 살생물물질 |
| 유효기간 7년 | • 물질 승인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 잔류성, 생물축적성, 독성 중 둘 이상 성질을 가진 살생물물질 |
| 유효기간 5년 | • 물질승인 기준완화대상 물질인 동시에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 물질이면서 잔류성, 생물축적성, 독성 중 둘 이상 성질을 가진 살생물물질 |

물질승인 기준 완화대상물질

1. 물질승인 대상 살생물물질의 사용목적 및 용도가 제한되어 사람 또는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은 경우
2. 물질승인 대상 살생물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위해성이 낮은 물질이 없어 해당 살생물 물질의 사용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살생물물질 변경 승인 사항

1. 살생물물질명(고유번호)
2.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3. 유지하여야 하는 살생물물질의 순도범위
4. 함유가 허용되는 불순물의 특성 및 함량범위
5. 사용자범위
6. 살생물물질 용도
7. 제조시설 소재지
8. 제조공정 등 제조방법

살생물물질 승인취소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경우
2.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물질승인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4.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을 당시 알려지지 아니한 위해성이 새로 밝혀진 경우
5.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해당 살생물물질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벌칙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물질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승인을 받은 경우
 - 물질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않은 경우
 -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03

살생물제품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 관리





살생물제품 승인 (법 제20조)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누가 •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어떻게 • 살생물제품 승인

승인 제외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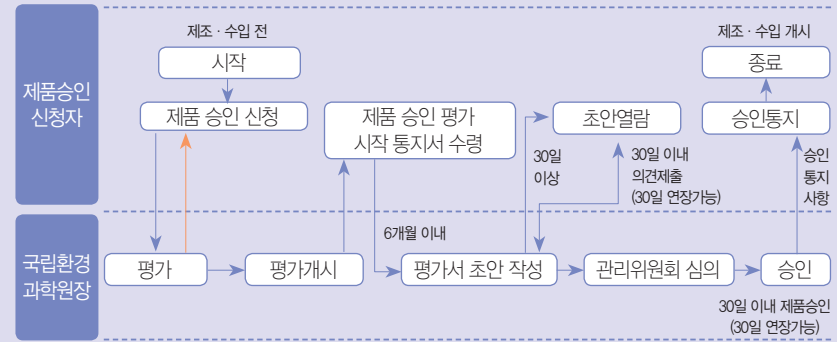
1.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용 살생물제품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인 살생물제품
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살생물제품
4. 타법에서 규제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

승인제외대상 타법을 및 제품군(타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의 제품)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
2.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 - 군수품
3. 「농약관리법」 -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 농약활용기자재
4. 「먹는물관리법」 - 수처리제
5. 「사료관리법」 - 단미사료, 보조사료
6. 「선박평형수관리법」 - 처리물질
7. 「식품위생법」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약사법」 - 의약품,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의약품
9. 「위생용품 관리법」 - 위생용품
10.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
11. 「화장품법」 - 화장품

살생물제품 승인 방법

살생물제품 승인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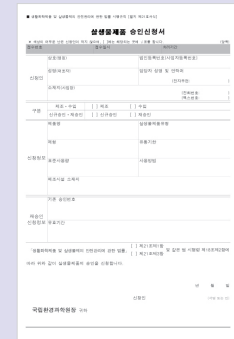


살생물제품 승인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chemp.me.go.kr>으로 승인 신청)

살생물제품 승인 제출서류

-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신청인 일반정보
 - 신청정보 (제품명, 제형, 표준사용량, 유통기한 등)
-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관한 자료
 -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목적 및 용도
 -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 제품에 함유된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목적 및 용도 (나노물질을 의도적으로 함유한 경우만 해당)
- 살생물제품에 관한 자료
 -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 살생물제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 형태 등 노출정보
 -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
 - 효과·효능
 - 분류·표시 및 포장
 -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제조·보관시설의 설치·운영 계획 또는 현황
-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살생물제품 승인 유효기간

| 구분 | 기준 |
|----------|--|
| 유효기간 10년 | · 일반적인 살생물제품 |
| 유효기간 5년 | · 제품 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제품 · 물질 승인 기준 완화대상 물질이 포함된 제품 |
| 유효기간 3년 | · 기준완화대상 살생물제품이면서, 물질승인 기준완화대상 물질이 포함된 제품 |

살생물제품 승인 기준 완화대상 살생물제품

1. 제품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이 산업용으로만 사용될 것
2. 제품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위해성이 낮은 제품이 없어 해당 살생물 제품의 사용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살생물제품 변경 승인 사항

1. 살생물제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2.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3.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살생물제품의 사용 대상자 및 사용 범위, 해당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살생물처리제 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
4.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 중 살생물물질,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5.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 중 살생물물질,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외의 성분 및 배합 비율(살생물제품의 분류·표시가 함께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6. 살생물제품의 제형, 표준사용량과 사용방법, 유통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용도

살생물제품 승인취소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 유사성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제품승인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4. 제조·보관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제조·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을 당시 알려지지 아니한 위해성이 새로 밝혀진 경우
6.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해당 살생물제품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벌칙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품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승인을 받은 경우
 - 제품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않은 경우
 -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살생물제품 표시기준 (법 제27조)

| | |
|------|--|
| 이행주체 | •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
| 이행대상 | • 살생물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기준에 맞는 사항을 표시해야 함 |

표시사항

| |
|------------------------------------|
| 제품명 |
| 살생물제품유형 |
| 유통기한 |
| 중량·용량 |
| 효과·효능 |
|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
| 표준사용량 |
| 제조사, 주소, 연락처(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
|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수입 제품에 한함) |
| 수입자, 주소, 연락처(수입 제품에 한함) |
|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에 한함) |
| 살생물물질 |
| 나노물질 |
| 기타 화학물질 |
| 제품 유해성·위험성 |
| 사용방법 |
| 사용상 주의사항 |
| 승인번호 |
| 제조번호 |

[표시사항]

| 살생물제품 한글표시사항 | |
|--|---------------|
| 승인번호: 0000-0000 | |
| 제품명: | 살생물제품유형: |
| 유통기한: | 중량·용량: |
| 효과·효능: |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
| 표준사용량: | |
| 제조사·주소·연락처: ^{*)2)} | |
|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 ^{*)3)} | |
| 수입자·주소·연락처: ^{*)3)} | |
|  살생물물질: | |
|  나노물질: | |
| 신호어 | 기타 화학물질: |
| 유해·위험문구 | |
| 예방조치문구 | |
| 사용방법 | |
| ① | |
| 사용상 주의사항 | |
| ① | |

[표시사항 예시]

표시방법

- 한글표기 원칙(외국어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 한글보다 작게 표시)
-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도록 표시
-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거짓으로 표시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살생물처리제품 안전·표시기준 (법 제28조)

| | |
|------|---|
| 이행주체 | •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
| 이행대상 | •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준수 |

안전기준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해당 제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될 것
- 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것
 -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받은 살생물물질로서 승인된 살생물제품 유형으로 사용되거나, 위해성이 낮아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인 경우
 - 외국 정부를 통해 안정성이 인정되었을 것

표시기준

- 유해생물 제거등에 대한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 제품겉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
 -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그 함유 사실 표기
 -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거짓으로 표시하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III.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유통 및 사후관리





표시·광고 제한 (법 제34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은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표시·광고문구를 제한함

- 누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
- 어떻게** • 표시·광고의 제한,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 명시

| | |
|------------------------|--|
| 표시·광고의 제한 |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사용금지 |
| 광고에 포함시켜야 하는 문구 명확히 기재 |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 |
| 오인의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지양 | 제품승인등을 받은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임을 표시·광고하거나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오인우려 있는 표시 및 광고를 할 경우

과징금 부과 (법 제38조)

환경부장관은 불법제품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혹은 살생물제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다만,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승인

-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살생물물질

- 살생물물질 승인을 받지 않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물질승인 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살생물제품

-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지 않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제품승인 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IV.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이용

- 누가**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살생물물질 승인, 살생물제품 승인 등을 신청하는 자
- 어떻게** • 기업 등록 및 회원 가입 후 시스템 이용(<http://chemp.me.go.kr>)
※기업등록 후 회원가입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
Chemical Product Management System

가입안내 시스템 소개

①기업등록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기업등록 | 회원가입 | ID/PW찾기

②회원가입
공지사항
1.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안전기준적합
2. 화학제품안전법 권역별 설명회 발표
3. FAQ,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기준
5. 안전기준 확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법령안내
1800-0490
상담시간 09:00~18:00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고객지원센터
1800-0490
상담시간 09:00~18:00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기타 참고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목록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 제품 관리

-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살생물제 관리

-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및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유통 사후 관리

-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 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